

# 《啓草存案》 解題

李 相 燦

동학농민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최근 학계에서는 동학농민운동에 관한 연구, 토론이 활발해졌다.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奎章閣》15집에서는 동학농민운동 관계 기록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啓草存案》(奎 17240)을 실는다.

《啓草存案》은 1894년 7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넉달간 議政府가 각 地方官, 察理使, 按覈使, 宣撫使 등의 狀啓, 牒報, 來電 등을 토대로 하여 국왕에게 보고하여 재가받은 내용을 날짜순으로 정리한 ‘存案’이다. 여러 책이었던 듯하나 제 1책만이 남아 있고 크기는 30.5×20.8cm이다. 동학농민군의 제 2차봉기가 1894년 9월 중순이었으므로 《啓草存案》의 내용 역시 ‘東徒’에 관한 것이 가장 많다. 이 외에도 각 지방의 농민층의 동향과 이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방관의 처리, 동학농민군 ‘진압’ 공로자에 대한 포상 등이 주목된다.

《啓草存案》은 전라도 지역의 ‘東徒’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東徒’의 동향과 함께 농민층의 동향을 개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농민봉기의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되어 있지만 지역, 시기, 주도자, 정부의 대책 등이 정리되어 있어서 동학농민군의 공격을 받은 郡縣과 농민봉기가 일어난 郡縣을 정리 개관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된다.

《啓草存案》은 정부측 기록인 만큼 동학농민운동과 이 시기의 농민봉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즉 金星奎 宋寅會 閔種烈(羅州牧使) 閔泳綺 孟英在 李勝宇 嚴泰永 金東錫 등 동학농민운동의 ‘진압’에 공을 세운 인물들에 대한 포상 기록, 농민봉기 주도자에 대한 사법 처리의 내용, 동학농민군의 공격으로 군기를 빼앗긴 지방관에 대한 罷黜 등의 인사조치, 농민봉기 지역 지방관의 부정부패에 대한 징치, ‘東徒’의 활동이 활발한 지역에 대한 巡撫使 召募官 宣諭使 등의 파견과 효유, 전라도 지역 均田使의 유배 등에 관해 정리되어 있다. 특히 全州土民의 聯名呈狀에 대한 정부의 조치, 慶尙監司의 挾弊 諸條 別單 등이 실려 있어서 농민봉기에 대응하여 정부가 취한 구체적인 개혁 조치의 내용까지 엿볼 수 있다.

또한 《啓草存案》에는 주목할 만한 몇몇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1894년 7월 말 동학농민군의 全羅右水營 공격, 南原의 金開南 병력의 규모가 5,6만이라는 사실, 전라도 均田使의 유배 등이 그것이다. 執綱所 시기 동학농민군의 대규모 공격 사실은 ‘全州和約’의 실체와 내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金開南 병력의 규모가 5,6만이었다는 것은 김개남 병

\* 필자 : 규장각 학예 연구사

력이 전봉준 병력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으로서 동학농민군 제 2 차 봉기의 주력부대에 관한 정보라는 측면에서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전라도 지역 均田稅 징수와 관련 均田使를 유배시킨 사실을 통해 동학농민운동의 직접적인 계기의 하나가 均田문제이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사실들을 출발점으로 하여 다른 자료를 보완한다면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다음 《啓草存案》은 지방관 등의 보고를 토대로 한 정부의 공식 기록, 특히 국왕의 재가를 받은 기록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동학농민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내용이 너무 간단하다는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동학농민군에 관한 사실이나 통계는 정부에서도 인정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동학농민운동 관계 기록 이외에 경상도 평안도 강원도 등지의 조세에 관한 기록도 약간 들어 있다.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이들은 동학농민운동의 경제적 배경을 알게 해주는 자료인 동시에 갑오경장시의 조세제도 개혁이 각지에서 실시되는 모습을 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될 필요가 있다.

끝으로 《啓草存案》 전체의 내용을 개관하고 자료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에는 목차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啓草存案》의 목차를 실는다. 《啓草存案》이라는 자료에 대한 이해와 동학농민운동의 연구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啓草存案 目次**(같은 날짜에 문건이 여럿 있을 경우 行을 달리하여 구분하였다.)

- 7. 21 강원 함경 民弊 지방관의 推考
- 7. 26 南陽民擾 죄인 鄭寅植 嚴刑定配
- 7. 27 今年 本州 貢馬의 明春 上納
- 7. 30 東徒의 전라右水營 공격, 右水使 推考, 東徒의 逮捕, 所奪軍器 환수 지시
- 8. 1 全州土民 聯名呈狀 중 有關國計 7조의 각조에 대한 정부의 조치
- 8. 10 永川 民擾에 대한 前郡守의 처벌은 按察使의 覈啓를 기다려 稟處할 것
- 8. 14 陵園 및 陵寢 奉審은 道內 秩高 守令이 替行케 할 것
- 8. 15 宋寅會 金星奎의 전라도내 수령 差送
- 8. 17 新結錢 挪用한 仁同府使의 拿問定罪  
公州 聚屯 匪類의 曉諭 歸化  
羅州 前牧使 閔種烈의 特爲仍任
- 8. 19 罪人 任應鎬의 移送, 李武榮의 捉致對質
- 8. 20 關西 宣諭使 일행 파견
- 8. 26 永川 前郡守 洪用觀의 犯藏事에 대한 처벌은 覈啓를 기다려 稟處할 것  
昌樂察訪 罷黜 犯贓錢 徵捧
- 8. 27 關西 新任 道臣에게 慰諭安接 지시
- 9. 2 魯城 民擾의 처리
- 9. 9 匪徒 돌입 星州, 牧使 罷黜  
魯城 民擾에 대해 魯城縣監 戴罪舉行  
大邱 前判官 犯贓錢 徵捧

- 9. 10 肅川 등 6읍 棄印, 該 지방관 罷黜 및 詳查  
永川郡守 罷黜 差代
- 9. 11 興陽縣監 礪山府使 順天營將 포상, 靈光 前郡守 징계  
陝川郡守 義興縣監 犯贓錢 徵捧
- 9. 12 日陣에 被拘된 瑞興府使의 罷黜, 委折更查  
前忠州牧使 閔泳綺 特爲仍任  
평안도 印信 兵符 鑄送
- 9. 15 경상감사 揀弊 諸條, 別單 後錄  
嶺南 宣撫使 邑弊民瘼  
水原 判官 犯贓錢 徵捧  
東徒 4.5천명 來犯醴泉
- 9. 16 各道一切上納 代錢 磨鍊  
各道道臣 箋文 進呈
- 9. 17 龍宮縣監 軍器見失事 論罪  
羅州 營將 仍任  
東徒 공격을 방어하지 못했거나 軍器見失한 전라도 지방관 12인 처리  
匪徒 南原府 점령으로 南原府使 罷黜  
龍宮縣監 軍器見失事 論罪  
前道臣 金文鉉 재임시 武南營 兵料의 정산  
湖南均田之白地徵稅 委折查覈, 均田使 金昌錫 定配  
湖南의 匪徒亂形已著 및 이에 따른 대비 지시
- 9. 19 平安道 印信 兵符 速造下送  
願納而補贖出義捐諸人의 포상(濟州)
- 9. 22 南原 聚會 匪徒 규모(5,6 만)와全州 金溝 聚黨 보고  
嘉山 龍川 守令 論罷  
申正熙 兩湖都巡撫使 差下  
신임 전라감사 李勝宇의 卽速赴任  
신임 南原府使 興陽縣監을 召募使로 差下, 興陽縣監의 당일 給馬下送  
河東 方有匪擾
- 9. 24 각처 匪類의 剿撫事를 巡撫使가 辦理
- 9. 25 新任 統制使 急速赴任 지시  
新任 洪州牧使의 赴任 申飭  
興陽縣監 實病으로 인한 改差 지시  
新差 長城府使를 召募使로 差下  
大邱判官 安義縣監을 河東 晉州 등지 剿匪討捕使助防將으로 差下  
兩湖都巡撫使 開府
- 9. 26 匪類厚待 수령을 摘發하여 從重論勸토록 지시  
洪川 匪徒 討捕에 공을 세운 孟英在의 포상
- 9. 27 忠清水使의 闕供으로 인한 論罪를 保留할 것
- 9. 28 義興 民擾 狀頭 李章鶴의 梟首  
9월 24일 匪類數萬來犯 上黨城 공격
- 9. 29 三南 召募使 6인 差下

- 9. 29 寧海 民擾 諸犯에 대한 처분  
義興 民擾 狀頭 梟首  
兩湖宣撫使 減下
- 9. 30 巡撫營 軍餉 分送  
鎮海前縣監의 처벌 및 犯贓錢 徵出
- 10. 1 關東 匪類 出沒, 討捕使 召募官 差下
- 10. 2 軍器見奪한 陰竹縣監 戴罪舉行, 경기감사 推考  
忠淸 淸安縣 軍器見失事, 該 縣監 戴罪舉行
- 10. 4 法務協辦 가해자 刻期詞察拿獲
- 10. 5 淸安 永同 軍器見失事, 該 縣監 戴罪舉行
- 10. 6 李道宰 全羅監司 差下
- 10. 7 洪州牧使 李勝宇 招討使 差下  
平壤庶尹 改差
- 10. 8 평안 함경 烽戍將卒 禦寒之具 경비를 該道 京上納 증 代錢酌定
- 10. 9 沁營 砲糧錢米木之移劃各營者 還屬  
淸州兵營 將卒이 大田에서 匪類에게 피살, 戰亡者장례포상, 匪類剿滅 지시
- 10. 11 瑞山匪類作變으로 殿牌 移奉 및 該郡守 差下
- 10. 13 永川民擾 諸犯 처리, 民擾의 三原因과 그 대책
- 10. 15 幸行時 策應之費는 京各司에서 進排하고 結所勿施
- 10. 16 右贊成 李容元 嚴飭肅命 지시
- 10. 17 忠淸 匪類 공격에 移駐한 該 監司 減俸 지시
- 10. 18 忠淸 監司의 요청으로 巡撫營 速爲下來 赴援
- 10. 22 嶺南 關東 召募使 差下  
泰安前府使 瑞山前郡守 宗府派員 三人의 피살 경위 조사
- 10. 24 忠淸兵使 推考  
金海前前府使 擲用公錢 徵捧  
忠淸兵使 論罷는 보류할 것
- 10. 25 江原 遷政 弊端 矯革  
春川府 軍布 蠲減
- 10. 26 忠淸兵使 狀啓 잘못으로 戴罪舉行 지시
- 10. 27 匪類를 선동한 前校理 李容鎬 農商衙門 參議 尹甲炳 拿囚嚴査
- 10. 28 全羅左水營 軍餉은 光陽舊屯穀中 取用  
羅州를 堅守한 羅州牧使 閔種烈을 湖南右沿招討使로 差下  
軍器見失한 善山 尙州 昆陽 등 守令과 禿用別將의 戴罪舉行  
嶺南賑資로 慶尙道내 上納中 錢 30만량 米 1만석 劃下
- 10. 29 安東 義興 大邱 盈德 등 守令의 債負 ——徵捧  
經亂後 關西지방의 軍錢結錢 및 各樣上納 除給  
咸鏡道 給災  
水原 舊陳結 查括劃充
- 11. 1 稅賦 代錢磨鍊으로 인한 嶺湖南 轉運 總務官 減下  
關西 日兵 伴接官 伴接從事官 差下
- 11. 2 燔亂 前校理 宋廷燮 拿囚嚴査 지시

- 11. 2 황해도 지역 匪徒 창궐에 대해 剿除 지시  
군공을 세운 湖南招討使 李勝宇 및 將卒들에 대한 포상
- 11. 5 新任 黃海監司 부임 준비 지시
- 11. 6 匪徒에게 잡혀 죽은 南原府使의 장례 및 포상  
召募官 孟英在, 剿匪時 공을 세운 幼學 7인과 砲軍 7인에 대한 포상
- 11. 7 경기도 果川 등 三邑 虛結에 대한 減稅 및 諸條四條 後錄  
영남 匪擾 討捕使 助防將 差下  
前載寧郡守로 公貨犯贓한 平昌郡守의 罷黜, 徵捧
- 11. 10 罪人 李容鎬 宋廷鸞 刑推得情 지시
- 11. 11 東學 魁首를 잡아올린 水原留守營 執事 嚴泰永의 포상  
강원도 稅賦에 관한 件
- 11. 13 평안도 稅賦에 관한 件  
匪類 軍공 의병의 포상  
전임 興陽縣監을 召募使로, 金山郡守를 助防將으로 差下
- 11. 14 匪徒에게 잡혀죽은 古阜郡守의 特贈 및 葬禮  
晉州牧使 改差  
全羅右水使 및 東萊府使 改差  
聞慶府使 仍任, 砲軍 餉料 措劃
- 11. 16 軍器見失한 康翎 松禾 縣監 戴罪舉行 지시
- 11. 17 軍器見失한 黃綱 平澤 懷德 報恩 沃川 등 수령 戴罪舉行  
匪擾를 막아낸 慶基殿令 金東錫의 陞敘
- 11. 18 報恩郡守를 報恩郡 助防將으로 差下
- 11. 20 開國紀年 曆書에 따른 祭享祝式 釐正